#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26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이훈기·김용만·김준혁

송재봉 · 김영배 · 조인철

문진석 · 신장식 · 박지원

김정호 · 송옥주 · 정동영

노종면 • 박홍근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암표매매를 한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인터넷 등을 통해 입장권 및 승차권 등을 거래하는 온라인 암표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택시, 식당업주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수준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이러한 파렴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암표매매의 벌칙 구성요건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사회공공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2.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의 현장에서나 온라 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			
한다.			
1. ~ 38. (생 략)	1. ~ 38. (현행과 같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	<u>&lt;삭 제&gt;</u>		
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			
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40.・41. (생 략)	40. • 4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u>&lt;삭 제&gt;</u>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			
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신 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 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 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2.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의 현장에서나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략)